경제정보

2001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사업 변경·시행계획

1. 창업자금 지원개요

❶ 지원목적 : 우수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❷ 지원규모(예산) : 3,200억원(하반기 1,000억원)

❸ 지원시기 : 2001. 11. 13 ~ 자금 소진시 까지

❹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미용·욕탕 등 기타서비스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2. 지원조건 및 지원범위

❶ 지원조건

- 상환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7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지원금리 : 연 6.25% 내외(변동)
- 대출한도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지원 : 동일기업당 5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
  -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 동일기업당 5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
  -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원 : 5천만원 이내(기술평가지원 제외)

❷ 지원범위 : 창업 및 창업초기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시설자금
  -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응용 S/W, 중고시설
  - 임차보증금 및 공장매매자금 (80%이내)
  - 법원, 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을 통한 경락자금 지원(80%이내)
  - 공장 건축공사비 (토지구입비 제외)
- 운전자금
  - 연구개발비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구입비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

3.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❶ 지원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보), 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을 통해 자금지원
- 중진공은 기술신보·지역신보의 보증분(부분보증 85%)에 대해서는 신용·직접대출(15%) 가능

※ 기술신보, 지역신보는 보증부 지원이며, 중진공은 담보부, 보증부 병행지원

❷ 지원절차

- 중진공을 통한 지원(담보부, 보증부)

자금지원신청 · 업체 ⇨ 중진공
↓
사업성 및 지원타당성 평가 · 중진공
↓
자금지원결정 및 통보 · 중진공 ⇨ 업체
↓
자금대출 · 해당 금융기관

- 기술신보·지역신보를 통한 자금지원 (보증부)

기술신보, 지역신보 · 업체 ⇨ 기술신보, 지역신보
↓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 기술, 지역신보 ⇨ 중진공, 업체
↓
자금지원결정 및 통보 · 중진공 ⇨ 업체, 기술신보 / 지역신보
↓
보증서 발급 · 기술신보 / 지역신보 ⇨ 업체
↓
자금대출 · 중진공 또는 해당 금융기관

❸ 지원신청접수

- 신청업체는 보유기술수준, 자금신청액,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접수기관을 결정하여 지원신청서류를 제출
- 문의 및 접수처
  - 중 진 공 : 지역본부
  - 기술신보 : 기술평가센터 및 전국소재 영업점
  - 지역신보 : 전국 신용보증재단
- 신청서류(소정양식)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 기술신보 2부, 지역신보 1부, 중진공 1부

❹ 지원추천 및 통보

- 중진공이사장은 기술신보·지역신보 또는 중진공의 평가내용 및 보증가능금액을 근거로 지원금액, 분할지급시기 등을 최종 결정하고 보증기관 및 대출 취급기관에게 즉시 통보

❺ 자금대여

• 자금대여는 중진공 또는 중진공과의 약정계약을 체결한 대출 취급기관(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원

4. 사후관리

❶ 중소기업청장(지방청장 포함) 및 중진공이사장은 창업지원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및 경영상황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점검하게 할 수 있음

❷ 중진공이사장은 매월별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중진공 지역본부장은 매분기별 지원실적을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서면보고해야 함

❸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자금 신청자가 기술 신보·지역신보 및 중진공의 심사결과에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기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할 수 있음

❹ 중진공이사장은 지원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된 창업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지원중단 및 지원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지원신청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기능식품 제조·가공 허가제 전환

이르면 내년부터 로열젤리, 키토산 등 건강보조식품의 제조·가공이 허가제로 바뀌어 성분 및 기능의 허위·과대 표시가 엄격히 규제된다.

대신 과학적 평가를 거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군과 기능성 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에 기초한 건강보조식품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불량 건강보조식품의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체계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기업대출 10兆 더푼다

은행들이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10조원이상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대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기업대출 확대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을 맞아 자금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됐던 기업 자금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인 '썩세스론' 1조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자금수요가 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최저 5조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해 대출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빛은행도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1조원을 추가조성하고 연말까지 5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조흥은행은 지난 주말 경영전략협의회를 열어 기업대출 확대를 결의하고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무차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기업대출을 위해 총2조원을 추가조성하고 본점 심사역을 기업현장에 배치하는 등 기업대출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산업은행도 최근 연말 자금공급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에 무제한 공급키로 했으며 저리의 외화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긴급 운영자금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한미은행은 지난 달말 발행한 외화 후순위채 1억6000만 달러 규모를 전액 기업대출에 활용키로 하고 영업점 창구에 대출을 독려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중소기업 대출 1조원 달성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은행 또한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부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등 기업대출 촉진책을 시행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소기업 신용평가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자산 5억원 이하 소기업에도 담보없이 신용으로 최고 1억원까지 자금을 빌려준다. 기업은행은 소기업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B+까지 9등급으로 구분해 대출금액 5000만원 이하는 자체 보유한 통계모형으로 빌려주고 5000만~1억원까지는 이번에 개발한 신용평점 모형을 적용키로 했다.

* 은행권 기업대출 확대현황

은행	지원내용	지원금액
산업	증기대출제한 완화/긴급 운영자금 지원	기업수요에 따라
국민	증기 대출금 확대	5조원이상
한빛	중소기업추가지원	1조원
조흥	대출재원 추가 마련	2조원
한미	후순위채 발행금액 활동	2000억워 이상
신한	대출 캠페인 실행	1조원
서울	대출절차 간소화	미정
기업	소기업 신용대출 강화	업체당 최고 1억원
하나	사전신용한도 부여	1조원

광업자금융자(융자사업)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에너지 및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확보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민영광산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채광, 운반, 굴진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한다.

1. 지원내용

❶ 지원대상 : 광산 -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 인가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민영광산의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로서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가 가능한 광산. 단, 석탄광은 장기가행탄광에 한함

❷ 대상광종 :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광종으로 개발가치가 있고 경제성이 있는 광종

2. 지원조건

❶ 시설자금 : 광산평가 결과 3년이상(석탄광 5년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

❷ 운영자금 : 광산평가 결과 3년이상(석탄광 5년이상) 가행할 수 있고 생산시설을 보유한 광산

3. 지원한도

❶ **시설자금** : 공사가 인정하는 시설계획금액의 100%이내

❷ **운영자금** : 전년도 매출실적 기준 1회전(4개월) 소요액 범위내

4. 지원절차도

광업권자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개발처		대한광업진흥공사 융자관리처
				융자안내 공고 ↓
융자신청	→			서류심사 및 신청서 접수 ↓
평가료 납부	→	광산평가 ↓	→	평가의뢰 ↓
		평가서 작성	←	신용조사 ↓
				융자결정 ↓
				대출승인 ↓
차입절차 이행	←			차입절차 이행통보 ↓
				담보 취득 ↓
자금수령	←			시설(전도자금) 및 운영자금 지출

5. 상환조건

❶ 시설자금 : 최장 8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❷ 운영자금 : 최장 3년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6. 대출금리

시설자금 연리 7.5%, 운영자금 연리 8.0% (차입자금인 경우 차입조건에 의함)

7. 지원절차

❶ 신청공고 : 매년 11월에 공고

❷ 접수기간

- 년중 수시접수. 다만, 당해연도 융자계획금액 초과시 접수마감

8. 신청접수처 : 대한광업진흥공사

9. 신청서류

융자신청서(공사 소정양식), 광업원부 등본(조광권자의 경우는 조광권원부 등본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거래 광산의 경우), 채광계획 인가서 사본(신규거래 광산의 경우)

2002년도 무역 · 투자촉진단 파견 대폭 확대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

- 2001년도에는 무역 · 투자촉진단을 48회 파견하여 600여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박람회) 40회, 시장개척단 20회, 투자촉진단 5회로 총 65회를 파견하여 770여 업체를 지원할 계획.

	2000	2001	2002
해외박람회 · 전시회	27회(320개사)	28회(340개사)	40회(460개사)
해외시장개척단	18회(209개사)	16회(212개사)	20회(250개사)
추자촉진단	3회(55개사)	4회(48개사)	5회(60개사)
계	48회(584개사)	48회(600개사)	65회(770개사)

■ 중소기업청이 파견하는 무역 · 투자촉진단은 전문업종 단체인 조합, 협회 등을 주관단체로 참여업체를 모집해 정부재정에서 참여비용의 일부를 지원

- 박람회(전시회)의 경우는 부스임차료 및 부스장치비를

지원하고, 시장개척단 및 투자촉진단은 상담장 임차료, 통역료, 바이어섭외비, 광고비 등 현지 상담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를 지원

- 특히, 금년부터는 무역·투자촉진단 파견지역 KOTRA 해외무역관으로부터 전략품목에 대한 시장전망 및 소비패턴 등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입수하여, - 무역·투자촉진단 주관단체 및 참가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마케팅 전략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청이 파견한 무역·투자촉진단은 '98년 25회 파견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왔는데, 그 간의 파견 성과는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금년의 경우에 모스크바 시계박람회(시계조합)에서 94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1억불 이상의 신규 수출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담회에서 접촉한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수출계약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성과는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수출을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함께 무역흑자 달성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

2002년도 무역투자 촉진단 파견 지원신청 안내

1. 개 요

❶ 목적

- 전문업종 중심으로 해외 유명 박람회, 전시회 및 시장 개척단 등을 구성,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효과적인 방식에 따라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❷ 파견대상 박람회 등

- 2002. 1 ~ 12에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또는 동 기간 중 구성, 파견되는 시장개척단

2. 지원 대상

❶ 자격

- 주관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무역촉진단"을 구성, 파견하고자 하는 자
- 참여 업체
  - 위 주관단체를 통하여 무역촉진단에 참여할 제조업체 등
  - 1개 무역촉진단은 원칙적으로 10개 이상의 업체로 구성

❷ 선정기준

- 전시회 및 박람회
  - 업종별 전문박람회 참가 촉진단 위주로 선정, 지원
  - 박람회 참여가 사전 예약되거나 예약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단순 참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KOTRA, 지자체등 공공기관이 지원계획을 기 마련한 촉진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장개척단
  - 동종품목의 시장개척단 우대
  - 틈새시장 개척을 위한 촉진단 위주 선정, 지원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지정 "수출지원 대상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 우대

3. 지원 절차

❶ 지원대상 무역촉진단 선정

- 주관단체별로 참가희망 박람회 등의 지명도, 업체 모집계획, 사업추진 의지 등을 심사해 선정

❷ 업체 모집 및 선발

- 주관단체별 선발업체수, 업종, 선발기준 등을 공고 참여업체 선발 – 주관단체별로 중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발지침"에 의하여 선발

4. 지원 내용

❶ 지원 항목

- 전시회 및 박람회 : 부스임차료(업체당 9m² 기준) 전액 및 기본 장치비 지원(임차료의 30%내외)
  - 1업체 당 1부스 지원(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 부스임차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장치비 지원 제외
  - 기타 개별 통역원 채용 경비 및 추가 장치비 등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참가업체 부담(1업체 1부스 지원)
- 시장개척단 : 현지시장조사비,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바이어 섭외비, 통역수수료, 광고비 등 공통경비

※ 전시회·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여업체 당 500만원 한도

❷ 지급 절차

- 주관단체에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사후정산